

하나 생계비계좌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「하나 생계비계좌」(이하 "이 예금"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 및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-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)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. .
- ② 이 예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.
-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,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계좌 해지 전에 이러한 제한사항(해지 후 당월 재개설 불가)을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입금제한

- ①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(250만원)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(매월1일부터 말일)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합니다.

제5조 거래제한

- ①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.
-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④ 이 예금은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제4조에 따른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·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·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·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·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제6조 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

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영업일(이하 ‘원가일’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이자계산 기준일: 매년 3,6,9,12월의 제3금요일

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이 예금의 가입 고객에게 아래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수수료 항목	우대 내용
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	무제한 면제 ※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
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	
납부자자동이체, 타행자동이체 수수료	
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	

*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(또는 ATM기)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(또는 ATM기)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<부 칙>

이 특약은 2026.02.02일부터 시행합니다.

※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